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정 1997. 6. 25
개정 2000. 5. 30
개정 2000. 12. 27
개정 2002. 4. 3
개정 2003. 3. 21
개정 2007. 9. 21
개정 2012. 7. 26
개정 2017. 2. 28
개정 2024. 11.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7. 26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공제사업"이라 함은 회칙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으로 한다. 다만 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을 제외한다)의 세무사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024. 11. 4 개정)
2. "손해배상공제회비"라 함은 손해배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24. 11. 4 개정)
3. "손해배상금(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회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위임인(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에게 본회가 손해배상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03. 3. 21 개정)
4. "손해배상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제 2 장 손해배상공제사업

제3조(사업의 범위) 손해배상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24. 11. 4 개정)

1. 손해배상공제회비 등의 징수(2024. 11. 4 개정)
2. 배상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

3. 배상금 등의 지급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2017. 2. 28 개정)

제4조(손해배상공제회비) ①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는 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는 30만원으로 하고, 입회시 납부한다.(2024. 11. 4 개정)
② 제2조 제1호의 단서에 해당된 회원이 세무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의해 공탁하지 않는 한 탈퇴와 동시에 손해배상공제회비 30만원을 납부한다.(2024. 11. 4 개정)

제5조(배상기금) ① 배상기금은 손해배상공제회계로 운용한다.
② 배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납부한 손해배상공제회비(2024. 11. 4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구상금액
3. 기타 수입금
③ 배상기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비용
④ 손해배상공제회계의 배상기금과 공제복지회계의 공제기금은 상호전용할 수 있으며, 배상기금을 공제기금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7. 2. 28 개정)

제6조(배상금) ① 본회가 위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결정된 위임인의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금 지급한도는 세무사 1인당 3천만원으로 한다.(2017. 2. 28 개정)
② 위임인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를 본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본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공제위원회의 심사 등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2024. 11. 4 개정)
③ 전체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가 직접 위임인과 절충, 합의, 중재하거나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2003. 3. 21 개정)

제7조(구상권 및 대위권) ① 본회는 위임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위임인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임인이 회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2003. 3. 21 개정)
② 본회는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시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해당 회원이 지급받는 공제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2017. 2. 28 개정)

③ 제2항의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해지된 회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2007. 9. 21 신설)

④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임인 또는 회원에게 필요한 증거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07. 9. 21 개정, 항번호 변경, 종전 제3항)

제8조(기금의 관리) 배상기금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제9조(손해배상공제위원회)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 11. 4 개정)

제1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2024. 11. 4 개정)

1.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2024. 11. 4 개정)
2. 배상금 지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구상권 및 대위권의 불이행 회원에 대한 강제이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하로 한다.(2017. 2. 28 개정)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제10조의 업무를 각 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집행) 회장은 제15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가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제계약

제18조(공제계약) ①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 11. 4 개정)

② 손해배상공제계약효력의 발생시점은 최초의 손해배상공제회비의 납입시점으로 본다.(2024. 11. 4 개정)

③ 본회는 손해배상공제계약의 손해배상책임과 한도, 손해배상공제회비의 납입, 배상금의 청구와 지급, 손해배상공제계약의 해지등 공제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2024. 11. 4 개정)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세무사법 및 회칙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 규정 및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7. 2. 28 개정)

② 회원이 위 규정 및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2017. 2. 28 개정)

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2024. 11. 4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경우 개인별 환급액의 산정은 본인이 납부한 총액에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3. 3. 21 개정)

⑤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공제회비의 환급을 요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2024. 11. 4 개정)

제 5 장　보　　칙

제20조(서류발급) 본회는 회원이 요청할 경우 공제사업의 가입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처)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사무는 본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2017. 2. 28 전문 개정, 제목 변경, 종전 사무국】

제22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및 결산은 본회의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7.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세무사 중 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7)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납부액 누계가 40만원 미만인 회원은 일시불로 4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4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0만원씩 납부한다.

부 칙 (2007.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경과조치) 본회는 이 규정 개정전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 30만원 초과하는 손해배상공제회비는 반환신청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신청서를 징구하여 반환금액에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공제사업 가입신청서

성 명	㊞	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 ) ~	
주 소					

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자)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세 무 사		사업소명칭		
주 소			전화번호	( ) ~
배 상 금	배상청구금액	금 원정 (₩ 원)		
	손해발생일자	년 월 일		
	수 령 방 법	직접수령 ( ), 은행이체 ( )		
	계좌이체번호	은 행 명 :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인)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위와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첨 부 1. 손해발생사유서 1부
2.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1부(판결의 확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

〈별지 제3호서식〉(2024. 11. 4 개정)

손해배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

발 급 번 호		세무사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사 무 소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손해배상보상한도액	30,000,000원 (삼천만원)		
가 입 일			

상기 세무사(사무소)는 한국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세무사회장

※ 이 공제증서는 위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2017. 2. 28 개정)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세 무 사</td><td>등 록 번 호</td><td></td><td>성 명</td><td></td></tr>
<tr><td>가 입 기 간</td><td></td><td>회비납부총액</td><td></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d>세무사와의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신 청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사유 발생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지급방법</td><td>은 행 명</td><td colspan="3"></td></tr>
<tr><td>계 좌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예 금 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td></tr>
<tr><td colspan="5">첨부서류 : 없 음</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2024. 11. 4 신설)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세 무 사</td><td>등록번호</td><td></td><td>성 명</td><td></td></tr>
<tr><td>가 입 일</td><td></td><td>납부금액</td><td></td></tr>
<tr><td rowspan="4">지급방법</td><td>은 행 명</td><td colspan="3"></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3"></td></tr>
<tr><td>예 금 주</td><td colspan="3"></td></tr>
<tr><td>반환금액</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2024. 11. 4 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한국세무사회장 귀하</td></tr>
<tr><td colspan="5">첨부서류 : 없 음</td></tr>
</table>